



홍예문
유형문화재 제49호)

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37-1번지 일원

현상변경허용기준

방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201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50m 간격)

구분	현상변경 여용기준	
	평지봉	경사지봉(3:10 이상)

1구역	임시지정보도 제한속도 40km/h 한방울로, 완화로 위한 시설에 한해 이용 - 기본 전용통로는 개별여행
2구역	- 최고높이 8m 이하 - 최고높이 10m 이하
3구역	최고높이 11m 이하 - 최고높이 13m 이하
그외지역	국도로 계획 및 유동에 관한 법률, 도로법 등 관련법령과 함께 처리 (시군구) 기준으로 계획 및 유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처리 제3자는 시장지정지구로 분류되며 계획 및 유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처리 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통·생산·환경·법· 재정 등 영향을 미친다.

■ SCALE : 1/3 000(A3)

